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5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2. 12.18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- 시·군·구 정보화 사업에 따라 한시 증원된 전산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4. 6. 30까지 연장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한시 증원된 전산8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4.6.30까지로 함.  
(조례 제500호 부칙 제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가. 지방자치법 제103조
  - 나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
- 기타 : 시군구 정보화 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  
(기획12200-21888)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500호(2000.11.10)부칙 제2조중 “2002.12.31”을 “2004.6.30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칙&lt;2000.11.10.조례제500호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(생략)</p> <p>제2조(한시정원)</p> <p>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1명의 존속기간은 <u>2002. 12. 31</u>까지로 한다</p>	<p>부칙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한시정원)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2004. 6. 30</u>-----</p>